

제2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4. 28.(수) 16: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 삼성전자(주) 등 13개 법인 - (2010-24-086)

-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삼성전자(주) 등 13개 법인의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모두 허가하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
 - 13개 허가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13개 신청 법인 모두 허가 대상 법인으로 의결
 - 허가 대상 법인(총 13개 법인)
 - 삼성전자(주), 구글코리아(유), 엔에이치엔(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위드유, (주)한국스마트카드, 서울특별시, (주)키위플, (주)유플렉스, 피알에프(주),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 (주)케어로드, 동륜에이치앤케이(주)

2)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티유미디어(주) - (2010-24-087)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와 티유미디어(주)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승인내용)

구 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티유미디어(주)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OBS-TV	YTN NEWS FM, tbs FM, tbs eFM
재송신 유형	동시 재송신	동시 재송신
재송신 방송권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국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 영서방송 - (2010-24-088)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영서방송에 대해 원안대로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

① (주)영서방송의 재허가 조건 위반 내용

- 2009년도 방송수신료의 10.5%(12억 5천 4백만원)를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 '연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

② (주)영서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2009년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2010년 8월 31일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0년 9월 10일까지 방송통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방송편성책임자 방송공표 및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주) - (2010-24-089)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방송편성책임자 방송 공표 의무를 위반한 (주) 문화방송과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전문화방송(주)에 대해 원안 대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

① (주)문화방송

- 위반내용

· '09. 12. 10. ~ '09. 12. 23. 방송개시 고지까지 방송편성책임자가 아닌 자를 방송 편성책임자로 공표함으로써

· 방송편성책임자 성명을 매일 1회 이상 공표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4조제3항을 위반

- 처분내용

·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 부과

② 대전문화방송(주)

- 위반내용

· 대전문화방송(주)은 방송편성책임자의 변경('10. 1. 19) 후 36일이 경과한 '10. 2. 24.에 방송편성책임자 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위반

- 처분내용

·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 부과

5)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10개사
- (2010-24-090~106)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과태료 부과 건’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분리하여 별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사. 보고사항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재보고하기로 함.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년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7:40)